

올바른 국가 개혁과 법치주의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사관계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훈순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

서론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대대적 언론 보도를 계기로 현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례 없는 대규모의 연속된 촛불 집회들 이후에 이어 진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계기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핵심적 국정기조들의 하나는 적폐세력청산이다. 적폐세력청산을 위해 가히 범국가적이라고 할 만큼 수 많은 국가 및 공공 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법에 의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대대적 심판이다.

국정원 적폐 청산을 위해 출범한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비롯하여 수 많은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개혁위원회 내지 적폐청산위원회 등과 같은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이 이미 구성되었고 새롭게 또 구성되고 있다. 위 위원회들은 해당 기관 또는 분야의 과거 적폐세력을 찾아내는 광범위한 조사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기약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의 이례적인 강도 높은 조사 결과 이전 기관의 리더십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법행위 혐의들이 나타나면 그 혐의 사실들을 우선 언론에 공표하고 동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 받은 수사기관들은 청산을 요청 받은 불법행위자들의 범법행위들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 압수, 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결과 불법행위들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검찰은 관련 사건 관계자들을 법원에 기소하고 있다. 기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들이 발부되어 많은 사람들의 구속이 집행되고 있다. 법원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재판에 기소되고 있는 수 많은 적폐세력 사건들에 대한 재판심리들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위시해서 수 많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 및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주요 인물들의 범법행위들에 대한 재판들이 계속 해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적폐 세력 검찰 수사를 2017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시한을 두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뜻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국가개혁을 위해 적폐세력에 대한 법률의 철저한 심판을 전개하는 것을 국정의 주요 기본 방향의 하나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국정기조는 2018년도뿐만 아니라 집권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 명백해 보인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올바른 국가개혁을 위해 참된 법치주의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특히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국가개혁을 위한 법치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

지, 반성경적 문제점과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성경적 가르침에 비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올바른 국가 개혁의 내용의 기준과 방향과 법치주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치주의의 당연한 대응은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률에 따른 엄정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동일 유사한 불법행위들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준법행위들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누적되어온 불법행위들을 의미하는 소위 “적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법자들에 대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적폐청산”은 법치주의와 부합하는 면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성경도 다스리는 자들이 가지는 칼은 불법(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여(로마서 13:4)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국법의 심판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공의로운 법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언급되어 왔다(신명기 4:8, 16:20, 사무엘하 23:3, 이사야 32:1, 예레미야 9:24), 아모스 5:24, 베드로전서 2:23, 요한계시록 19:11 등). 널리 알려진 표현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아모스 5:24). 이처럼 공의로운 법이 다스리는 국가원리인 법치주의는 국가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공의로운 법률이 지향해야 할 정의는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 공의 내지 정의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인간들이 자신의 뜻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

니라 창조주께서 정해 놓으신 공의를 겸손하게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수의 인간들이 뜻을 모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을 제한 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법실증주의 관점은 법치주의를 내걸지만 다수 인간들이 자신들의 뜻을 법률의 이름으로 구현하려는 인치주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을 통한 독재의 폐해를 생생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 사례들이 나치 파시즘이 지배했던 독일과 공산당 1당 독재를 시행했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국가들이다. 아무리 다수가 뜻을 모아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정의로운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자연법주의 관점이 국가의 법률은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따라야 한다는 성경적 법률관에 부합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는 다수의 뜻을 이유로 하여 넘을 수 없는 기준이므로 성경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다(출애굽기 23:2).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는 부나 권력 같은 세력을 가진 자의 편을 두둔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의 편을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령하고 있다(레위기 19:15, 출애굽기 23:3).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세력들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 이는 더 이상 진정한 법치가 아니다. 나와 너, 우리와 너희로 나누어 법률 심판을 나와 우리는 면제한 채 너와 너희로만 향하는 편향적 적용을 할 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소위 ‘내로남불’의 폐해를 발생시킨다. 이는 법치로 가장하여 특정 인간 세력이 타인들만 법의 심판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배제하려는 뜻을 관철하는 인치로 전락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특히 피해자는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인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가해자를 향해 친히

정부는
국가개혁을 위해 적폐세력에 대한
법률의 심판을 전개하는 것을
국정 방향의 하나로 하였고,
적폐청산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수를 갚는 사사로운 심판을 해서는 안되고 대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성경은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로마서 12:9).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담은 법률에 의한 독립기관의 조사와 심판에 맡기는 것으로 구현된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피해자들이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권 내지 심판권을 가지면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되어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 조사와 심판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할 수 있는 공정성이 담보된 독립적인 제3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또한, 법의 심판의 적용하는 수사와 기소 대상자들은 누구의 행위이든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정권 참여자들만이 적폐이고, 새로이 정권을 잡은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법치를 내세운 정치 보복으로 귀결될 위험에 빠진다. 부자들만이 적폐이고 가난한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거나 자본가들만 적폐이고 노동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역시 법치를 가장하여 실제는 가난한 자들이나 노동자들을 내세운 독재가 되어 버려 성경적인 공의로운 심판에 어긋난다. 성경은 가난한 자과 약자의 억울함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수 없이 언급하면서도 법에 의한 심판(재판)을 할 때 세력 있는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만 재판하라고 너무도 명백히 명령하고 있다(레위기 19:15, 출애굽기 23:3).

현 정부가 내세워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 국정 기조는 그 기준이 공의로운 법률이기 보다는 다수 국민의 뜻인 여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면이 있고, 그 추진 주체들이 공정성이 보장되는 독립 기구이기 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피해자들이나 이를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면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그 적용 대상에서도 이전 정권 담당자들에게 집중되거나, 노조들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좌파단체들보다는 우파단체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우려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우려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성경적 법치주의에 비추어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기조는 성경적 공의를 더 잘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성경적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더 앞서는 것이 필

자의 솔직한 소감이다.

진정한 국가개혁은 성경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법치주의는 법치주의로 위장한 인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또 다시 법적 심판 대상이 되는 새로운 적폐가 될 수 있음도 명백하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려면 현 정부의 통치담당자들은 적폐청산 활동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진정한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법치의 기준을 국민의 변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공의로운 법률로 삼아야 하고, 추진하는 담당자들을 가해자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3자로 구성하며, 적용 대상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불문하며 어느 정권에 있던 사람들인지도 불문하여 공정하게 적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추진되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적폐청산 국정 기조 실행담당자들 중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원하는 성도들은 위와 같이 성경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정을 이끌어가 주기를 호소하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통치 담당자들을 도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다.

올바른 국가 개혁의 절차와 법치주의

국가 개혁은 방향과 내용도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하지만 절차적으로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마땅하다. 법치주의는 올바른 국가 개혁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절차도 제시한다.

법률에 의한 심판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에 따라야 한다. 법률에 따른 조사와 수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조사 내지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할만한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혐의)을 가질만한 단서들이 자연스럽게 제공될 때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 또는 정상적인 제보나 자발적 신고에 의한 인지 등이 있을 때에 심판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수사가 개시될 만한 합리적 의심 근거들이 없는데도 막연한 의심으로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혐의를 찾아내려는 이른바 탐색적 수사가 되면 그 수사권을 휘두르는 세력들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며 자신들의 부당한 뜻을 관철하려는 권력 남용이 가능하게 된다.

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종 개혁위원회나 적폐청산위원회는 개혁이나 적폐청산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이전 책임자들의 불법행위혐의를 찾아내는 수많은 조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1차적 조사들을 행하는 각종 기관들은 사실상 법률 심판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수사 내지 조사를 행하고 있다. 그 결과 수사할 만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내지 조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 세무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 노동청 등 국가기관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증거들을 송부하며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범 정부적이며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대대적인 조사 행하는 각종 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부여 받은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조사권을 부여 받지 않은 수많은 조사 기관들이 대통령, 각부 장관들 및 각종 기관장들에 의하여 만들어 졌고 만들어 지고 있다. 또한 각종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의 성향도 공정성을 가져야 마

땅한데 현 정부에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구성의 법적 근거도 충분치 않고 구성원들의 공정성도 의심되는 각종 조사기구들은 특별한 수사나 조사를 해야 할 계기가 충분치 않음에도 이전 정권이나 경영권 담당자들의 불법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여 불법 행위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러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정권 교체가 마다 이전 정권의 불법이나 비리들에 대한 적지 않은 법적 조사와 심판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수 많은 기관들마다 각종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을 구성하여 범 정부적, 범 국가적 조사들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 범위와 강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인다.

조사를 개시할 만한 정당한 단서가 없는데도 막연한 의심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들이나 부도덕한 행위들을 찾아내는 방식은 소위 면지떨이식 수사로서 대표적인 수사권의 남용현상이다. 모든 인간들은 연약하여 법률적 또는 도덕적인 결함과 약점들을 많든 적든 가지기가 쉬운 법이다. 그러므로 면지떨이식 표적 수사가 만연하게 되면 그러한 조사 내지 수사권을 가진 자들 앞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자신도 언제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에 떨며 수사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나 억압 등에 맞서기 어렵게 된다.

또한 법치주의의 절차인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 역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특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적용하고 특정한 사

람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절차적인 면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 된다. 특히 심판할 때 성경이 금하도록 명하신 세력 있는 자들의 편을 들게 되는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레위기 19:15).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기관의 구성과 조사 개시와 심판 적용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절차에 비추어 보면 현 정부의 범국가적 적폐 청산 기조는 정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 적폐청산이 법치주의의 절차적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편향성 때문에 또 다른 적폐로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결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혁의 기본적 내용과 방향으로 법치주의를 삼은 것은 공의로운 법률에 의한 국가의 다스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의로운 국가 통치를 추구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치주의를 통한 국가 개혁이 인치를 법치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참된 법치를 따라감으로써 반드시 성공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적 법치주의는 사람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높이려는 겸손한 자세가 핵심요소다. 심판을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반영하는 법률에 맡기고 이를 따르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률 역시 경외해야 마땅하다. 교만하게 자신의 뜻대로 법률심판을 조

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공의로운 법률심판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률을 겸손히 경외하는 자세를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인 대통령, 국회의원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고 통치자들이 인치의 유혹에 빠져 법률을 자신들의 뜻으로 조종하려 한다면 많은 국민들도 법률을 경외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올바른 국가 개혁의 방향, 내용, 절차로서의 성경적 법치주의는 특정인인 대통령이나 특정세력인 집권세력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반영하는 법률에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특정 시대 국가 통치를 담당하는 자들이 법률 심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도하는 뜻을 구현해보겠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법치주의를 가장한 인치주의로 귀결될 위험에 빠진다. 이는 결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또 다른 불의한 행동들을 초래하여 또 다시 법에 의한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법치주의를 내건 적폐청산 기조의 구현행동들이 성경적 법치주의에서 벗어나서 인치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공의로운 법치로 돌이켜야 마땅할 것이다. 이 땅 위에 진정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성경적 공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적 법치주의에 부합되도록, 국정이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각 다스림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특정 시대 특정 집권자 세력들의 뜻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에만 주목하겠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적 공의로운 길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가 비추는 길을 따르는 방향으로 자신의 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실천 행동들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각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이 땅인 우리 조국에 구현되도록 하는 일에 믿음과 용기로 헌신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 상황들 속에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